

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시험장 방역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## ■ 법전 사용 관련

■ **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 시험용 법전을 배부하며, 매 교시 시험 종료 후에는 회수합니다.**

① 최초 법전 배부 시 개인용 비닐팩을 함께 배부하니, 응시자는 **법전 표지에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**하고 **매 교시 시험 종료 후 배부받은 비닐팩에 법전을 밀봉하여 제출**해야 합니다.

② 법전이 회수된 후 시험실 시험관리관이 소독제를 사용하여 법전이 포장된 **비닐팩을 소독한 후 법전가방에 보관**합니다.

※ 법전가방은 자물쇠로 잠금 후 시험실에 보관

③ **매 시험 시작 30분 전 법전가방 잠금 해제** 후 응시자에게 비닐팩 밀봉상태로 **개인 법전을 순차 배부**하며, **배부된 법전은 시험 시작 전까지 열람할 수 없습니다.**

④ 법전에 포스트잇 등 부착물 사용 및 메모는 금지되며, **밀줄긋기는 허용**합니다.

※ 논술형 시험 답안지 작성 시 사용되는 **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단순 밀줄긋기만 허용**

⑤ 시험시간 중 법전을 접거나 자를 끼우는 행위는 허용되나, 시험종료 후 원상복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■ 시험실 환기 및 점심식사 관련

- 시험실 환기를 위해 매 시험 시작 후 30분 동안 시험실 출입문을 개방하고 시험을 진행하며, 이후 1시간 경과 시마다 10분간 환기를 실시합니다.

※ 시험당일 시험실 온도 및 외부 소음 등 시험장 상황에 따라 환기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

-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포함한 전체 시험기간 중에는 시험실 내에서 음료 이외의 취식을 금지하며, 점심식사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법전원 건물 등 다른 공간(빈 강의실, 휴게실 등)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시험장 내 응시자 간 간격 유지 및 대화금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시험장 재입실 시 손소독, 발열 체크, 응시표 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.

### [참고 : 시험장별 점심식사 가능 장소]

시험장	점심장소	시험장	점심장소
건국대	상허연구관 4, 5층 빈 강의실	인하대	60주년기념관 로비, 5층 휴게공간(501, 512호)
경희대	구 한의대학관 3, 4층 빈 강의실	동아대	법학전문대학원 3층, 5층
고려대	법학관 신관 501호 지하 1층 베리타스홀, 리베리타스홀	부산대	경제통상관 1층 빈 강의실
서강대	하비에르관 338호	경북대	법학전문대학원 구관 301, 306, 502호
서울대	법학전문대학원, 학생식당	영남대	종합강의동 3층 빈 강의실
서울시립대	100주년기념관 3층 빈 강의실	원광대	법학전문대학원 512호
성균관대	국제관 1층, 지하 1층 빈 강의실	전남대	진리관 4, 5층 빈 강의실
연세대	학생회관 식당	전북대	법전원 신관 2, 3층 빈 강의실
이화여대	이화포스코관 지하 1층 빈 강의실	충남대	백마교양교육관 1층 빈 강의실
중앙대	102관 11층	충북대	인문사회관 1, 2층 빈 강의실
한국외대	인문과학관 4 ~ 6층 빈 강의실	강원대	글로벌경영관 1층 빈 강의실
한양대	제1공학관 6층 빈 강의실	제주대	법학전문대학원 109호
아주대	연암관 1층 빈 강의실		

※ 시험장별 점심식사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장소(점심식사는 제공되지 않음)이며, 시험당일 시험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

- **확진자와 자가격리자**는 사전 신청을 거쳐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, **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**할 수 있습니다.

※ 별도 첨부된 **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 참고**

- 시험 시작 전 **유증상자(37.5°C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)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시험이 진행**되며, 시험 종료 후 보건소 지침에 따라 보건 교육 또는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- **시험 진행 중 발열 또는 기침 등 증상 발생 시**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, **별도의 시험실로 이동하여 실시**될 수 있습니다.

- 시험장에서는 **마스크(KF80 동급 이상)를 상시 착용**하여야 하고, **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**합니다. 예비용 마스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- 시험실 내에서는 **음료 외의 모든 음식물 섭취가 금지**됩니다.

- 시험 당일 **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** 시험관리관이 **즉시 퇴실을 요구**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##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

-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,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, 마스크를 올바르게(코, 입 완전히 덮도록)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.  
  
※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
-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시험관리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실 안·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,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,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.
- 시험 시작 후 시험관리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.
- 시험 종료 후, 시험관리관 지시에 따라 퇴실(마스크 착용, 이동 시 앞 사람과 일정 거리 유지)하여야 합니다.
-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,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 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(☎1339, 지역번호+120)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◆ 확진자 시험 응시 절차****① 확진판정을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**

- 응시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, 즉시 유선(02-2110-3876, 3245)으로 **확진사실을 알리고**, 당사자 본인이 **지자체 담당자(보건소 확진통보 담당자)에게도 시험응시 사실을 알려야 시험응시 준비가 가능합니다.**

**② 확진자 응시 사전신청**

- 사전 신청기간 : **2022. 1. 9.(일) 18:00까지**
- 제출서류 : **응시 신청서(별지 양식)**, 시험응시가 가능하다는 **주치의 소견서**
- 제출방법 : 법무부 법조인력과(02-2110-3767, 3245)에 신청의사를 알리고, 이메일 (bangori80@korea.kr)로 서류 제출(접수여부 확인필요)

**◆ 사전 신청기간 종료 후 확진 판정 받은 경우**

- 사전 신청기간(2022. 1. 9.(일) 18:00) **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,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시험 당일 오전 7시까지 응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(전화로 사전연락 필수)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장까지 시험시작 시간 전(09:30)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.**

**③ 유의사항**

- 신청완료 및 서류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(02-2110-3876, 3245)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시험감독관 파견, 시험장 준비,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.
- 치료시설 여건, 응시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시험 여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.
- 각 지역별 **확진자의 예정 시험장**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, 응시자 본인이 보건소 확진 통보 담당자와 지자체 병상 배정 담당자에게 본인의 응시지역에 따른 아래의 기관으로 병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- 법무부는 응시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확진자가 입원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중수본과 지자체 등에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.
- 확진자의 건강상태, 시험 실시기관의 사정 등으로 시험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확진자 응시자가 타 병원에 입원한 경우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응시자가 시험장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

### **확진자 응시 지정 기관 현황**

지역	거점 병원(중증 응시자용)	생활치료센터(경증 응시자용)
서울	서남병원	(남산)서울유스호스텔
부산	부산시의료원	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
대구	대구동산병원	중앙교육연수원
광주	빛고을 전남대병원	광주소방학교생활관
대전	을지대학교병원	KT대전인재개발원
강원	원주의료원	-
제주	제주대학교병원	국세공무원교육원

## ◆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절차

### ①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즉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연락

- 응시자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, 즉시 유선(02-2110-3876, 3245)으로 자가격리 사실을 알리고, 당사자 본인이 지자체 담당자(보건소 자가격리 담당자)에게도 시험 응시 사실을 알려야 시험응시 준비가 가능합니다.

### ② 자가격리자 응시 사전신청

- 사전 신청기간 : 2022. 1. 9.(일) 18:00까지
- 제출서류 : 응시 신청서(별지 양식), 자가격리 통지서, 외출허가증
- 제출방법 : 법무부 법조인력과(02-2110-3767, 3245)에 신청의사를 알리고, 이메일 (bangori80@korea.kr)로 서류 제출(접수여부 확인필요)

### ◆ 사전 신청기간 종료 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

- 사전 신청기간(2022. 1. 9.(일) 18:00) 이후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, 시험 당일 오전 7시까지 응시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 (전화로 사전연락 필수) 후 시험 당일 미리 지정한 시험장까지 시험시작 시간 전(09:30)에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.

### ③ 유의사항

- 시험응시를 위한 임시 외출 허가를 본인의 관할 보건소에 요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, 응시자 본인이 이동수단을 마련하여 별도 시험장까지 시험시간 내에 도착, 시험 종료 후 복귀가 가능해야 합니다.
- 신청완료 및 서류도착 여부를 법조인력과에 전화(02-2110-3876, 3245)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시험감독관 파견, 시험장 준비, 시험문제 이송 등의 문제로 사전에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.
- 자가격리자의 시험장은 별도 유선 또는 문자로 고지할 예정입니다.

[별지 양식]

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 
응시 신청서 [확진자, 자가격리자용]

◆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응시 신청서를 제출하면, 보건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시험실시 장소 및 방법 등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.

구 분 (확진자 , 자가격리자 ) ※ 해당란에 ✓ 표시

성 명 \_\_\_\_\_  생년월일 \_\_\_\_\_

수험번호 \_\_\_\_\_  관할보건소 \_\_\_\_\_

주 소 \_\_\_\_\_

※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

연 락 처

• 본 인 \_\_\_\_\_

• 가족 등 \_\_\_\_\_ (관계 : \_\_\_\_\_)

• 기 타 \_\_\_\_\_ (관계 : \_\_\_\_\_)

※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(2개 이상)

유의사항

- 신청기한 미 준수 시 시험장 확보 등의 문제로 시험응시 불가 (※ 단, 신청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시 예외)
- 시험응시 신청 후 응시자 건강악화 등 여건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
- 제출서류 미비 시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
- 방역준수사항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
- 시험응시 신청 관련 기타 유의사항은 '21. 11. 19. 공고된 내용 참조

본인은 위와 같이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별도 시험장 응시를 신청합니다.

붙임 : (확진자) 주치의 소견서 1부

(자가격리자) 자가격리통지서(사본) 1부, 보건당국의 외출허가증 1부

신청일자 . . .

신청인 \_\_\_\_\_ (서명)

법무부장관 귀하



< 제11회 변호사시험 방역관리 절차 >

